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3
----------	-----------

제출연월일	2009. 1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시행 및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제정 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조례의 목적과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공유재산 통칙[제2장]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 5조)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

#### 다. 행정재산[제3장]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 라. 일반재산[제4장]

-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함(안 제26조)
-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함(안 제 29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34조)

#### 마. 공유임야 관리[제5장]

-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함(안 제38조)

#### 바. 청사관리[제6장]

-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함(안 제39조)

#### 사. 관사관리[제7장]

- 관사는 군수·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함(안 제44조)

#### 아. 물품관리[제8장]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함(안 제54조)
-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60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

#### 자. 보칙[제9장]

- 변상금의 부과절차, 분할납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 제81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률과 보상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 차. 부칙

-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부칙으로 규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1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설기술관리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9. 24. ~ 2009. 10.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 등록된 사항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① 공유재산 중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일이 군수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재산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③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사용·수익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대부

제20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한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다.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채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분의 2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분의 25

3.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제31조(대부정리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정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2절 매각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2. 기존의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공유재산 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는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군 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한도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절 신탁

제36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37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6장 청사관리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관사관리

제44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관리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군수가 허가한다.

제45조(사용자의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3.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7조(관사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공동주택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49조(사용료의 면제)**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비품의 관리) 제53조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갖춰두고 제48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2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 또는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장 물품관리

### 제1절 물품 통칙

제53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의회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2,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5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 제2절 취득

제5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8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으면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직접 할 수 있다.

제6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절 출납

제6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4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4절 보관

제65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6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 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6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가 제68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 물품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는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절 처분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0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⑦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6절 장부

**제73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갖추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절 검사 및 인계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77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인계의 절차) 제7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서에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장 보칙

제8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백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 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④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⑥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⑦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⑧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연 100분의  
6”을 “연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3항제4호”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5년”을  
“10년”으로 한다.

⑨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⑩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⑪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